

“일반직 5급 보훈특별고용 채용공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18 - 77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훈특별고용 채용공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www.apfs.kr)”에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I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 형태	채용 분야	채용 구분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구분	임용 예정일
정규직 (일반직)	농업재해보험관리	신입	5급	1명	특별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특별고용)	‘18.12.31.

* 보수수준 : 연 40백만원 수준(우리 원 내규에 따르며, 보수준칙 등 우리원 내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입직은 5급 1호봉을 적용하되 군 경력 반영하여 호봉 조정

1. 모집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 자신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 제13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2. 우대 사항

○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보훈)대상: 본인·유가족(만점의 10%), 가족(만점의 5%) 가산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

○ 직무 관련 교육(통계 및 수학 관련) 이수자

○ 직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기술서 참조)

※ 직무 관련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2018.12.4.)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III

담당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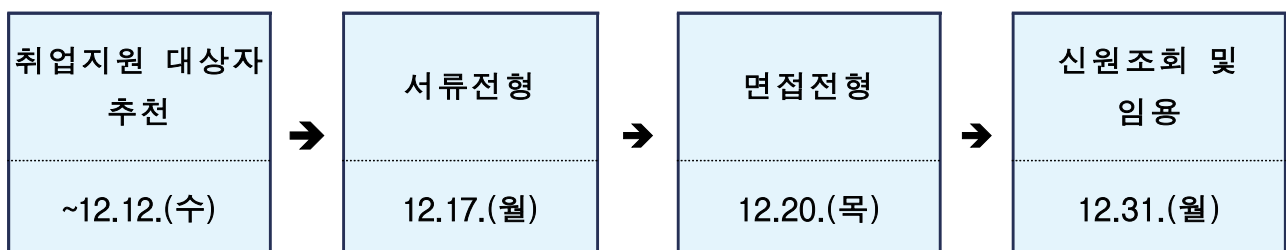
[농업재해보험관리]

- 재해보험 통계·데이터 활용방안 및 계획 수립
- 재해보험 관련 통계·데이터 수집·관리·분석·서비스
- 기타 행정업무 등

IV

채 용 절 차

1. 개 요



2. 서류전형

가.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특별고용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절차에 따라 공고 및 원서접수 등 선발 절차를 거쳐 대상자 추천

나. 원서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서울지방보훈청의 접수기간*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 서울지방보훈청 보훈특별고용 담당자를 통해 입사지원

○ <별첨> 우리 원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12.17.(월) 17:00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

3.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나. 면접전형 시행일

○ 2018.12.20.(목)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8.12.21.(금) 17:00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

4. 채용관련 문의사항

- 서류전형: 서울지방보훈청 보훈특별고용 담당자(02-2125-0843)
- 채용전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인사 담당자(02-3775-6704, 6757)

V

증빙서류 제출

1.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및 추가서류 원본을 제출
 - 제출기간: 2018.12.21.(금)~12.27.(목)
 - 제출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01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채용 담당자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①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증명서(보훈청) ② 임용관련 서류(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해당자	① 직무관련 자격증명원(자격증) ②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 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필히 인사기록카드 등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제출 ③ 직무관련 학교교육·직업교육 성적증명서 또는 수료증(교육시간 확인 가능 증빙) ④ 사회봉사활동 및 수상경력 증명서

VI

응시자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위·변조시에는 우리원 채용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제출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등 우리원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2018.12.4.)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첨부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경우 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받기 원하시는 경우, 발송 비용을 응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기간: 2018.12.31.~2019.1.14.
 - * 청구기간이 지난 원본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처 : ehlee@apfs.kr (문의 : 02-3775-6704, 6757)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직원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 및 기 채용공고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통해 재공고 합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첨부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